

# 예 산 총 칙

제1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 
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<b>724,396,287</b>	<b>24,377,887</b>
일반회계	598,759,278	17,962,778
특별회계	125,637,009	6,415,109
기타특별회계	24,793,716	743,811
• 주택사업특별회계	786,340	23,590
• 교통사업특별회계	19,541,828	586,255
•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,129,873	123,896
• 기반시설특별회계	335,675	10,070
공기업특별회계	100,843,293	5,671,298
• 상수도사업특별회계	24,651,407	739,542
• 하수도사업특별회계	64,391,886	1,931,756
•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11,800,000	3,000,000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898,777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 
3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
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